



보 도 자 료

배 포	2020. 4. 18.(토)
담 당 과	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
과 장	신 준 수 (☎043-719-3302)
사 무 관	유대규(☎043-719-3316)

4월 18일~19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

주말 동안 913만 7천개 공급

-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**4월 18일과 4월 19일 공적판매처** 를 통해 공급되는 **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**하였습니다.
 - 오늘(4.18.)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23만 9천개이며, 내일(4.19.)은 189만 8천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.

(단위: 만 개)

구분	총계	일반 공급			우선 공급		
		약국	하나로마트	우체국	의료기관	특별공급	기타
4.18.(토) 공급예정량	723.9	576.8	5.2	-	141.9	-	-
4.19.(일) 공급예정량	189.8	189.8	-	-	-	-	-

- ※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%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(우정 사업본부, 농협하나로마트, 약국, 의료기관, 특별공급 등)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함
- □ 주말 동안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¹0서울·경기지역은 약국, ²그 외 지역은 약국·하나로마트 입니다.
 - 일부 공적판매처는 주말 휴무로, 휴일지킴이약국·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와 마스크 웹/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- **주말 동안**에는 **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**할 수 있으나 주중(월요일~금요일)에 구매하지 않은 분만 가능합니다.
- □ 대리구매 대상자는 [●]장애인, ^②장기요양 급여 수급자, [©]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, [©]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, [©]임신부, [©]국가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, [©]요양병원 입원환자, [©]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, [©]일반병원 입원환자이며,
 -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*를 모두 갖추어 **구매대상자**의 **출생 연도에 맞춰** 구매해야 합니다.
 - ※ 전체 대리구매 대상자, 대리구매자 및 구비 서류는 <첨부> 참조
- □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,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,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
 - 또한 **손 씻기** 등 **생활수칙**을 잘 지키면서 **기침** 등 **호흡기 증상**이 있거나 **의료기관 방문** 시에는 **마스크**를 반드시 **착용**하시기 바랍니다.
- □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·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,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- 또한,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·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·공정위·국세청·관세청·경찰청·지자체로 구성 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,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<첨부>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






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
대리구매 대상자	대리구매자	지참 서류			
① 장애인	제한 없음	① 장애인등록증(장애인 복지카드)			
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			
❸ 1940년 이전 출생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			
4 2002년 이후 출생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			
⑤ 임신부	주민등록부상 동거인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임신확인서(요양기관 발급)			
6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	제한 없음	①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(국가보훈처 발급)			
7 요양병원 입원환자	요양병원 종사자	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			
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	요양시설 종사자	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시설장 발급)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			
③ 입원환자 (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)	주민등록부상 동거인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입원확인서(해당 의료기관 발급)			

*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1주·1인 2개씩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





